금과 관련한 세금

작년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금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.

이번주는 금과 관련한 세금을 정리하였다.

금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은 재무부장관령 34호 (PMK No.34/2017) 에 규정되어 있고 금 괴 (Emas Batangan) 와 금 보석류 (Emas Perhiasan) 로 구분된다.

금괴는 국영기업(BUMN)인 PT Aneka Tambang (Antam) 의 본/지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.

금괴는 부가세가 없지만 소득세 PPh22 가 적용이 된다. 구매자가 납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0.45% 납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0.9%의 소득세가 부과된다.

예를 들어 납세등록을 한 구매자가 150 그람의 금괴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, 150그람의 금괴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100,000,000 + 4,500,000 (PPh22) = 104,500,000 을 부담하여야 한다.

납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09,000,000을 부담하여야 한다.

금 보석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소득세 PPh22 는 적용되지 않는다.

세율은 금을 가공하는 자가 금반지등을 판매하는 곳에 금 보석류를 제공할 경우 20% *10%의 부가세가 부과된다. 예를 들어 금반지를 1,000,000에 판매할 경우 부가세는 1,000,000 * 20% * 10% = 20,000이 되며 세공업체는 금반지 1,000,000에 부가세 20,000 을 포함하여 1,020,000을 금 판매업체에 받아야 하고, 금 판매업체는 이익 포함해서 1,500,000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1,500,000에 부가세 10%를 포함하여 1,650,000을 소비자에게 받아야 한다. 물론 금 판매업체가 년 매출 48억루피아 이하 영세업체고 부가세과세대상업체가 아니면 1,500,000에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이다.<끝>

문의: kimjhoon@bngconsulting.co.kr